

기본과 원칙 준수!



거래기본계약서

우림기계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공존공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거래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기본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갑과 을의 모든 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

- ① 개별계약에는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위탁연월일, 물품등의 명칭·사양·수량·단가, 납품대금의 지급방법,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및 개별계약과 이들에 부대한 갑이 승인한 도면, QC공정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내 검사체크시트등 제반 서류에 따른다.
- ④ 갑과 을이 체결한 개별계약 또는 발주서, 협정서, 합의서 등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내 용은 본 거래기본계약을 적용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변경 시 갑의 요구로 물품 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 (발주)

- ① 갑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물품등을 위탁할 때에는, 을이 물품 등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발주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품등의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③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물품에 대한 견적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갑의 요청 시 물품의 내용에 따라 견적금액의 세부 내역서를 신속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생산 계획이나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급품의 소유)

- ① 무상 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하고, 무상 지급품에 근거하여 제작, 가공 또는 수리한 무상 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된다.
- ② 유상 지급품의 소유권은 해당 지급품의 대금을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할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 한다.

제9조 (지급품의 취급)

- ① 을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지급품을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갖고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 지급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② 을은 무상 지급품에 대하여 갑 이외의 소유물과의 구분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무상 지급품에 관하여 제3자로 부터 가압류·압류 등의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 무상 지급품이 갑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즉시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을은 불필요하게 된 무상 지급품이 그 부산물이 있을때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지급품의 멸실, 훼손)

을은 지급품이 멸실, 훼손, 도난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는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변상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작)

을이 제품, 부품 등을 제작할 경우, 갑이 승인한 도면, 사양서, 시방서, 작업표준서등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갑이 제공한 도면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단 변경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져야한다. 단, 개선제안, 시장성 등으로 을의 제안을 갑이 정식 문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서류의 관리)

- ① 을은 갑으로부터의 도면, 사양서, 시방서, 작업표준서등 그 밖의 서류(이하 서류라고 한다)를 엄격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승낙이 없이 제3자에 열람, 복사, 배포해서는 안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된 도면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면의 신규 배포나 개정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을은 이에 대한 수령확인과 기 배포된 도면의 반환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의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작 사양서등 제반 서류도 변경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만 된다.

- ④ 갑으로 부터 지급된 도면등 제작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갑의 승인 없이 개정, 폐기 또는 제3자에게 반출해서는 안된다 .
- ⑤ 을은 서류를 개별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의 종료 또는 갑의 지시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준수 및 관리)

- ① 을이 갑의 작업장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을은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제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현장에 을의 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 갑이 요구하는 지시에 따라 개별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해당 작업장에 계약이행을 수행하는 을 또는 을의 하도급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③ 갑은 해당 작업장에 계약이행을 수행하는 을 또는 을의 하도급인의 종업원 중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을에게 즉시 다른 사람과 교체를 요구하거나 해당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의 작업 장소에서 작업기간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갑의 안전관리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또한 갑의 승인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⑤ 을은 환경보호와 종업원의 안전.보건.건강 및 인권보호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갑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 (보고, 조사)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목적물에 관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와 지급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 또 갑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을의 사업장에 들어가 이러한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 ② 갑은 전항에 의한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있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납품방법)

- ① 갑이 을에게 물품 등의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 등에 따라 을은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목적물의 제작에 있어 납기를 엄수해야 한다. 단, 갑.을 양쪽이 협의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 적용한다.
-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제작진행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납기 및 장소)

납기란 물품 등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갑이 물품 등을 을로부터 납품 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17조 (납기의 변경)

- ① 을은 납기전에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려고 할 때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을은 납기까지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사유 및 납품 예정일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납기연기)

-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납품되지 못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납기 경과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전망이 있고 또한 갑이 납기의 연기가 가능할 때는 갑은 을의 납기 연기 신청에 따라 납기를 연기 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의 경우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을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을의 쟁의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목적물을 납기일까지 납품 할 수 없을 경우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납기의 연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조건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납품용 서류의 제출)

- ① 을은 목적물의 납품시 갑이 정한 납품서류(원재료성적서, 열처리검사성적서, 부품공정검사표, 제품테스트결과서, 신뢰성시험성적서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목적물의 납품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갑이 목적물의 납품과 함께 제출을 요구하는 제반 서류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분할납입)

을은 개별계약에서 분할납품 계약을 한 경우나 갑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21조 (출하, 포장)

- ① 목적물의 출하는 을이 갑에게 납품용 서류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출하하여야 한다.
- ② 포장 형태는 갑이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제22조 (검사.검수의 합리화)

- ① 갑은 을이 물품 등을 납품하면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검수 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갑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검사.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검수에 합격한 시점을 물품 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품 등을 수령할 때 검사.검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 ④ 갑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시에는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⑥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⑦ 갑은 목적물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을의 작업장 또는 위탁 장소를 방문하여 재료, 공정, 품질, 치공구 관리 등의 감시와 제조.품질.납기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을은 검사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납기 또는 갑이 지시한 기일까지 해당 물품의 교체나 수정을 완료하여 다시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 (품질보장 및 납기 엄수)

을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을 통해 갑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

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성능 또는 납품 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체상금)

-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을 갑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기간 내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수입검사 또는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만 상기 각호의 지체상금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 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추가품의 납입)

- ① 을은 제22조의 검사 결과 수량 부족이 판명될 때는 해당 부족품을 신속하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 단 별도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전항의 납입·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본 계약에 정한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불량품의 납입)

- ① 을은 제22조의 검사 결과 불량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대응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납입·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본 계약에 정한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불합격품 및 과납품)

- ① 을은 검사 결과 목적물이 불합격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부담과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불합격품은 을의 동의하에 갑이 폐각처리 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신속하게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을 을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을에게 반송 할 수 있다.
- ③ 갑은 불합격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특별채용)

갑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그 사유가 사소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대체품의 수정이나 추가 제작이 어렵다고 판단할 갑의 승인 후 입고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대금은 갑과 을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 (단가결정)

물품등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재위탁)

-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물품 등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위탁 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물품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수.위탁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유로 '제3자의 선정, 약정조건 설정 등 재위탁 거래 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이행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또는 원자재가격 등 물가변동으로 갑 또는 을이 목적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이전에 제출된 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대금지급)

- ① 갑은 납품용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에 을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의 지급 요건은 제22조 3항에 의거하여 입고 후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갑의 기준에 따라 마감 처리된 물품에 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이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③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한다.
-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중 채권상계, 불량감가, 기타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갑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다른 사유로 지연이 될 경우 대금 지불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기준으로 한다.

제33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갑이 수출용으로 을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단, 을이 내국신용장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물품수령증 교부)

갑이 을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 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소유권의 이전)

- ① 갑이 목적물의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 ② 을의 의사표시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제36조 (채권상쇄)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채권과 상대방의 채무를 상대방으로 상쇄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정한 상쇄는 갑 또는 을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 통지하여 완료된 것으로 한 다.

제37조 (품질, 성능등의 보증)

- ① 을은 목적물에 관하여 그 품질, 성능 및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보증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출하 완료 후 1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목적물에 을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에 의한 결함, 변질 그 밖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또는 이것에 근거한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교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③ 전항의 보증기간 경과 이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설계 또는 제작상의 과실로 숨은 하자 발생과 이에 따라 목적물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지게 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져야 한다. 단, 갑이 지급한 물품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8조(불합격시의 처리)

- ① 을은 납품한 물품이 소정 기간 내 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불합격할 시는 결과분에 대하여 제24조에 의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제41조 4항 5항의 배상 책임을 진다.

제39조 (위험부담)

출하 완료 전에 생긴 목적물의 멸실, 훼손, 수량부족, 변질, 기타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을의 부담으로 하고, 목적물의 검사 완료 후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 (유사품의 제작, 판매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물에 관련된 갑의 도면, 사양 또는 그 일부를 변경한 도면 및 사양에 근거한 목적물의 유사품을 제3자를 위해 제작, 판매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 갑이 산출한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제41조 (제조물책임 및 배상책임)

-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공급한 목적물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나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갑과 을은 2항에 따른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공정이나 조업차질, 납기지연 등으로 갑에게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을은 계약 위반에 따른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만약 계약서상 위반사항이 갑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 갑이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 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할 경우, 을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그 제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42조 (비밀유지)

- ① 을은 갑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 도면, 기술정보 및 기술자료(소재, 공정, 치공구, 설비, 기타)와 개별계약 이행중에 습득한 갑의 기술, 설비, 생산, 영업 등 사업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② 을은 갑이 목적물에 관하여 제공한 전항의 모든 자료와 습득한 내용을 계약이행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갑이 제공한 내용중 일반적인 것 또는 을의 독자적인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제외하고 갑이 제공한 1항의 자료를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 일제 복사할 수 없다.
- ④ 을의 귀책사유로 비밀 누출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책임과 함께 갑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43조 (노하우의 사용)

을은 목적물과 관련된 갑이 가지는 노하우 및 기술, 정보, 자료(이하 노하우라고 한다)를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조 과정에서 습득한 무형자산(발명,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 등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갑에게 귀속한다.

제44조 (불법행위 책임)

을은 계약이행에 관하여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갑의 종업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 (이행의무)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시킨 경우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있어 부담할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그 제3자에 부담시켜야 한다. 단, 그 경우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상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다.

제4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 양도, 승계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47조 (거래정지의 예고)

갑은 기종변경, 신제품 전환,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당하는 유예기간을 갖고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을은 거래 변경시 갑의 승인과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부당감액의 금지)

갑이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 갑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49조 (산업재산권)

- ① 을은 갑의 물품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 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갑과 을은 물품등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제1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 중 상호 허여(許與)할 수 있다.

제50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을과 갑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을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 물의

가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영업비밀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
 3. 기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제조방법,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③ 제1항에서 “임치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수행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 ④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한다.
1. 을이 동의한 경우
 2. 을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⑤ 임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갑과 을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임치기관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51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① 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을이 계속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 될 때
- ② 을은 본 계약의 해지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52조 (계약 해제.해지시 조치)

- ① 을은 전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

한다.

1. 을은 지급품, 기술자료, 서류 등 갑의 소유에 관련된 일체를 즉시 갑에게 반환 할 것
2. 을은 보관중인 모든 목적물(장치품을 포함)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전항 제2호에 의하여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할 경우 을 소유의 도면, 재료, 기계, 치공구등을 갑의 목적물 완성에 필요로 할 때는 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야 하며 양도 가격이나 대여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전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언제라도 목적물품등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반출 및 인수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을 또는 갑이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약정의 갱신 또는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기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동 개별계약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 (기밀의 유지)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 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그 부속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를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영 제11조에 의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 (기타)

- ① 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관례 따른다,
- ②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부 칙 -

1. 본 계약은 2018년 1월 1일부 개정 시행 한다.

201 년 월 일

갑(위탁기업)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13 (외동)
상 호 우림기계주식회사
대표자 한 현 석 ①

을(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